

원심이 피고의 정정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에 관한 상반된 증언에 대해 배심원에게 사실인정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므로 파기 환송한다

Prozeralik v. Capital Cities Communications Inc.

21 Med. L. Rptr. 2257(뉴욕주 대법원, 1993)

사건개요

1. 피고는 WKBW-TV Channel 7 과 라디오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데, 1982. 5. 6. 피고 경영의 위 방송국이 방송하는 지역에서 납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음날 피고의 텔레비전 방송 정오뉴스와 라디오 방송의 오후 12 : 45, 1 : 45 및 2 : 45 뉴스는 위 사건을 보도하였으며, 위 뉴스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FBI 는 어젯밤 치크토와가에서 발생한 납치폭행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나이가가라 폴스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John Prozeralik 를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에 의하면 그는 치크토와가에 있는 하워드존스스모텔로 유인 또는 강제로 끌려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얻어 맞았다고 한다. FBI 는 그에 대해 조직범죄와의 금전거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
2. 위 방송 직후, 원고 및 그의 변호사들은 피고에게 원고가 위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도 실제 피해자가 David Pasquantino 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저녁 6 시 및 11 시 텔레비전뉴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방송하였다. 「피해자는 Prozeralik 이 아니다. FBI 는 오늘 아침 피해자가 Prozeralik 이라고 발표, 확인한 바 있으나, 본 방송국의 독자적인 조사에 의하면 그는 연루되지 아니한 것이 판명되었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의 저녁 6 시 및 11 시 텔레비전뉴스 및 3 회의 라디오 뉴스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로 원고의 성명이 등장하게 된 것은 같은 날 피고 뉴스관계자들의 아침회의에서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즉, 위 회의에서 한 기자가 「피해자가 아마도 원고일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것은 원고의 성명이 그에게 처음 머리에 떠오른 이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언동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원고는 그 지역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을 뿐이었다.
4. 피고의 정오뉴스 진행자인 DiBiasi 기자는 위 추측에 기해서 FBI 에 원고가 위 범죄의 피해자인지를 문의하였다. DiBiasi 기자와 FBI 의 공보관인 Thurston 은 그들 사이의 전화통화의 내용에 관해 전혀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는데 DiBiasi 는 자신이 Thurston 에게 원고이름을 대자 다른 연락이 없는 한 그대로 써도 좋다고 하였다고 증언하고, Thurston 은 그와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자신은 원고의 이름을 알려 주거나 확인한 일이 없다고 증언한다.
5. 원고와 그 변호사가 피고방송국을 접촉한 이후, 피고방송국의 뉴스책임자인 Steven Ridge 는 역시 Thurston 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Thurston 도 Ridge 에게 자신이 DiBiasi 기자와 통화 시 피해자의 이름을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이름을 확인해 준 바 없다고 알려 주었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명예는 심히 훼손되었으며, 그의 영업상 이익도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

6. 제 1 심 법원은 배심원단에게 피고의 최초방송과 정정보도는 법률상 당연히 허위(false as a matter of law)인 것으로 취급하라고 피고의 이의를 물리치고 실시했다. 배심원재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약 1,800 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평결하였으나, 재판부는 그 손해액을 감축하여 총 1,550 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산상 손실 5 백 50 만 달러: 징벌적 손해 (punitive damages) 1 천만 달러].

원심법원인 제 1 심 법원은 위와 같은 판결을 유지하였으나, 피고는 ① 제 1 심 법원이 배심원단에게 피고의 최초방송과 정정보도는 법률상 당연히 허위인 것으로 취급하라고 실시한 것은 잘못이고, ② 원고는 현실적 악의(actaul malice)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③ 보통법상의 악의(common law malice)가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잘못이며, ④ 손해배상의 액수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판결요지(다수의견)

1. 제 1 심 법원이 배심원단에게 피고의 위 최초방송과 정정보도를 법률상 당연히 허위인 것으로 취급하라고 실시한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사실인정권을 가지고 있는 배심원단이 피고 소속의 기자가 FBI 수사관이 원고의 신원을 확인해 준 것으로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공적 인물인 원고는 배심원단이 피고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도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으므로, 상소심에서 배심원 실시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상소심은 막바로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새로운 재판을 위하여 환송하여야 한다.
3.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를 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실적 악의는 보도내용의 진부에 관한 피고의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무도함 또는 악의에는 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판결이유(요약)

1. 원심이 배심원단에게 피고의 최초방송과 정정보도를 법률상 당연히 허위인 것으로 취급하라고 실시한 것(jury instruction)은 잘못된 것으로, 파기환송을 면할 수 없다. 원심은 FBI의 수사관인 Thurston과 DiBiasi의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배심원단에게 Thurston의 증언내용을 진실로 채택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신빙성 문제와 현실적 악의를 결정할 수 있는 배심원단의 권한을 침해했다. 원심이 배심원단에게 피고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내용이 원고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방송했다는 사실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하도록 실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 심리할 중요한 요소이다.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의 원고는 보도내용의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확고한 법률상 원칙이다(Immuno AG v. Moor Jankowski). 원심이 피고의 최초방송을 법률상 당연히 허위의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실시한 부분은 정당하나, Thurston이 Prozeralik을

피해자라고 「말하였거나」 또는 「확인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DiBiasi 기자가 Thurston 이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직 사실인정자(fact finder)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문제에 관해 배심원단은 Thurston 과 DiBiasi 의 증언 중 어느 부분을 믿을 것인가 하는 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야만 했다.

증거의 가치를 판별하고 증인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인정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원심이 배심원단에게 정정보도를 법률상 당연히 허위인 것으로 취급하라고 실시한 것은 배심원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박탈하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을 스스로 결정해 버린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정정보도 및 Thurston 과 DiBiasi 의 대화내용에 관하여 배심원단에게 광범한 사실인정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명하지 않을 수 없다.

II. 다음으로, 이 사건을 즉시 기각할 것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공적 인물인 원고가 명예훼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서는,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증거」(convincing clarity)로 그와 같은 보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가지고 행하여졌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그 보도가 허위인 것을 알거나 또는 그 진실성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with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it was false or not)하는 것을 의미한다(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80). 연방대법원은 Bose Corp. v. Consumers Union of U. S. Inc. 사건에서 원고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함에 있어 피고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주관적으로 그 내용의 진실여부에 심각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위의 현실적 악의라 함은 단순한 악의 또는 통상적 의미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고가 그 허위성 여부에 대한 고도의 인지가능성(high degree of awareness of probable falsity) 또는 그 내용의 진실여부에 심각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와 같은 재판에서, 법원은 독자적인 판단권을 행사해서, 기록상 현실적 악의가 확신할 수 있는 정도로 명백하게(with convincing clarity)입증되었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상고심인 이 법원은 통상 법률적용만을 검토하고 확정된 사실관계를 다룰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 악의를 확신할 수 있는 정도로 명백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는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고심의 검토책무는 정황증거, 피고의 의도에 관한 증거, 사실인정자의 사실인정결과 등 사실심에서 현출된 모든 기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 검토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검토권한에 입각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배심원단이(정확하게 실시 받았더라면) 피고가 일응 그 허위성 여부에 대한 고도의 인지가능성 또는 그 내용의 진실여부에 심각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정도의 충분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판단한다. 원고가 제시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배심원단은 피고가 Prozeralik 이 피해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한 의심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 사건의 실제피해자인 David Pasquantino 가 피고회사와 경쟁방송사에 의해 피고의 방송 전일인 5. 6. 밤 11: 00 뉴스에서 그 신원이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직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 뉴스 종사자들이 원고를 이 사건의 피해자로 추측한 유일한 이유는 피해자가 그 지역의 식당경영자 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뿐이고,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범죄발생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

Thurston은 자신이 DiBiasi와의 전화통화중 DiBiasi가 자신에게 원고이름을 대자 다른 연락이 없는 한 그대로 써도 좋다고 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다. 피고 방송국의 뉴스 책임자인 Ridge도 그가 정정보도를 방송하기 전 Thurston과 통화를 하였는데, Thurston은 그에게 자신이 DiBiasi 기자에게 원고의 이름을 확인해 준 사실을 부인하였다. 과실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입증책임을 다할 수 없으나, 이 사건에서는 배심원단이 피고의 현실적 악의가 존재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할 충분한 자료가 있다. 이 사건은 Mahoney v.

Adirondack Publishing Co. (71NY2d 31)와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이다. 위

Mahoney 사건은 한 신문사의 기자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축구경기에서 코치가 선수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신문에 그 기사를 게재하자, 코치가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축구경기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 코치의 언동은 듣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그 발언내용을 상이하게 이해할 충분한 소지가 있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위 Mahoney 사건의 증거는 그 기자가 자신의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의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에 필요한 헌법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현실적 악의가 법률상 당연히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사건의 중요한 특색은 원고의 이름이 피고회사 직원들의 회의도중 원고가 그 지역사회에서 식당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떠올랐다는 점이고, 이에 관한 직접증거가 제시되어 배심원단은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의심하였다(knew or suspected)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었다.

배심원단에게 제시할 일응의 증거를 판단함에 있어, 이 법원은 전체 기록상 나타나는 증거의 장단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 악의의 존부에 관한 배심원단의 결정을 받을 권한을 박탈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을 즉시 기각할 것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법원은 다른 사정과 함께 중요한 쟁점에 관한 Thurston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피고의 상황설명의 불합리한 점을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urston은 기자가 자신에게 전화하는 경우 자신은 결코 다시 전화하지 아니하는 것(no-call-back)을 기자가 문의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취급하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고, 이러한 것이 자신의 직무관행이었다고 증언하는데, 위와 같은 증언은 그의 FBI로서의 직무선서에 비추어 신빙할 만한 것이다.

피고 주장사실을 쉽사리 믿기는 어려우나, 피고는 그 직원들이 주관적으로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보유하였기 때문에 이 법원은 일응의 사건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론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Bose 사건이나 Mahoney 사건에서 지지된 바도 없고, 만약 그러한 주장을 채용한다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테스트를 수용하는 셈이 되어 결국 명예훼손소송은 어느 것도 배심원 판단에 회부될 자격이 없는 결론에 귀착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어 이 법원은 배심원단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양쪽의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할 책무가 정당하게

부여되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배심원단에게 현실적 악의 및 손해배상의 판단을 회부할 정도의 확실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바로 기각되어서는 안 된다.

III. 다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논점을 제기하는 것도 이 병원의 책무이다. 제 1 심이 배심원단에게 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시는 위 논점에 관하여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지적하여 환송 후의 새로운 심리 및 장래 제기될 사건을 위하여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New York Times v. Sullivan 에서 정의된 현실적 악의는 그 자체만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를 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악의는 공포된 내용의 진부에 대비하여 볼 때 피고의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러 한 악의는 「어떠한 개인을 악의 적이고, 터무니없고, 부주의하고, 또한 타인의 권리를 고의로 무시하는 무모한 행위를 자행함을 이유로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무도함 또는 악의에는 달하지 않는다(Vassiliades v. Garfinkles's, Brooks Bros., 492 h2d 580, 593).

이러한 종류의 보통법상의 악의(common law malice)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마음의 상태와 허위내용을 공포하는 동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론상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가가 가능하기는 하나, 이 사건의 기록상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증오, 악의, 범죄적 정신상태 또는 전통적으로 요구되어 온 보통법상의 악의를 갖고 행한 범죄적 행위의 피해자라고 결론 내리기는 부족하다.

III. 다른 쟁점들은 더 이상 논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상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재판을 명하기로 한다.

소수의견

Levine 판사의 소수의견(일부에 관하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 1 심 법원이 배심원단에게 한 피고의 1982. 5. 7. 자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방송의 허위성에 관한 설시는 잘못이므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이 법원의 다수의견에는 찬동하나, 한편 원고는 피고의 현실적 악의, 즉, 피고가 그 보도가 허위인 것을 알거나 또는 그 진실성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they were false or not)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확실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